

제2024-017호

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태도1004호

어선번호 : 1212008-6482204

운항구간 : 상태도
(흑산면 상태 도리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사업자명 : (주)남해고속

사업자 주소 : 전라남 목포시 해안로 182번지
(연안여객선터미널 3층 315호)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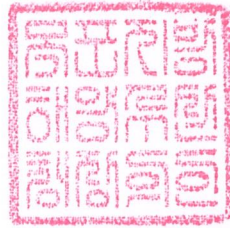
2024년 8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부속선 운항관리 규정

태도10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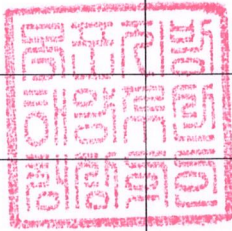


 (주)남해고속

개 정 이 력

○ 선명 : 태도1004호(상태도 부속선)

| 개정일자 | 개정항목 | 변경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속선 운항관리 규정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여객선 (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본선과 육지 간 여객의 중계운송에 이용하고 있는 부속선 “태도1004호”의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선박 운항기준

- ① 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현지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부속선 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에 통보하고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선 선장은 운항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부속선 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와 협의하여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운항통제기준 : 모선(초쾌속선)과 동일

제 3 조 : 운항항로[별첨1]

- ① 운항기준 : 흑산면 상태도리항으로부터 약 1km(접선반경 약 500미터) 단,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서 요청하는 지점에서 접안할 수 있다.
- ② 운항거리 : 500m이내
- ③ 운항시간 : 5~10분 이내
- ④ 항로수심 : 3m~30m
- ⑤ 항해장애물 : 없음

제 4 조 : 여객 승·하선 (본선과의 견현 높이차 30cm 이내)

- ① 여객의 승·하선 시는 부속선 선장 및 본선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한다.
- ② 여객은 정원범위 안에서 승선할 수 있으며 승선인원은 본선 선장이 확인하고 통제한다.
- ③ 여객은 승선 즉시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도록 한다.([별첨2]●여객배치도)
- ④ 여객의 승·하선은 지정된 선착장을 이용한다.
- ⑤ 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 보관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하고 운항구간의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 ⑥ 부속선 선장 및 본선 선장은 부속선의 안전성 및 복원성을 감안하여 정원승선 또는 적량화물을 적재토록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위험물 적재금지)

제 5 조 : 선박운항

① 출항 준비사항

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

② 운항 종료 후 선박행동 및 관리책임

1. 운항종료 후 상태도리항 선착장(석축부두)에 계류.
2. 부속선 안전관리 책임은 선주(선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3. 기상악화 시 또는 태풍접근 등에는 계류삭을 증강하거나, 흑산도항으로 피항 또는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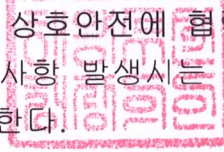
제 6 조 : 운항관리

①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1. 정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 차례 증회 운항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객정원만이 승선했을지라도 여객 휴대화물의 적재에 따른 복원성을 감안하여 승선인원을 적절히 감원 승선시켜야 한다.

② 출항 전 점검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 제1항(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선장이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선박회사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보완 조치 후 출항에 임해야 한다.

③ 부속선 운항 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1. 부속선 선장은 본선 선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2.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에 특이사항 발생시는 지체없이 본선 선장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속선 선장은 여객의 승·하선시 및 부속선 운항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 부속선 정비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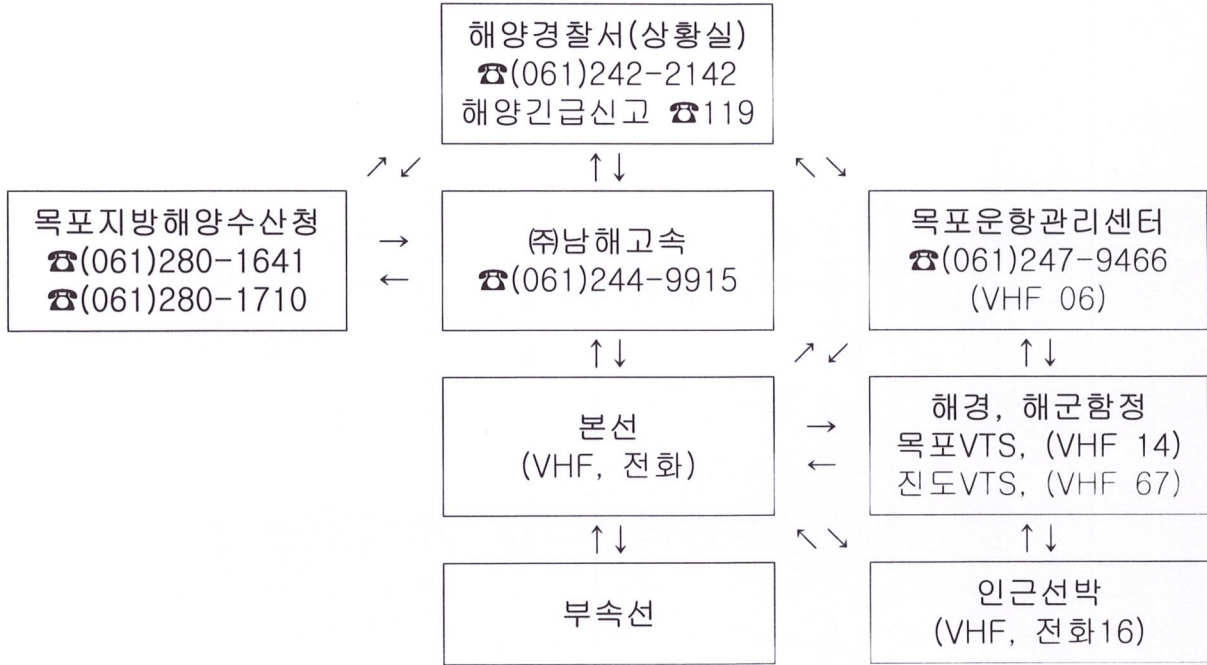
- ① 부속선 선장은 법정검사 시 철저한 정비 후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필하고 운항한다.
- ② 안전시설,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은 출항 전 점검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③ 사업자는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 제2항(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월1회 이상 부속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2.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 조치 후 보고)

[비상상황 연락기관]



3. 비상시 부속선과 본선의 연락은 통신기(VHF)와 휴대전화 등으로 한다.
4. 현장보존 및 관계기관에 통보
5. 사고내용 및 인원 등의 조사 기록유지
6. 피해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 기타 사항

- ①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부속선 및 본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동”사본을 부속선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한다.

붙임 :

- ① 운항항로
- ② 여객배치도
- ③ 선적증서
- ④ 어선검사증서
- ⑤ 어선특별검사증서
- ⑥ 출항전 종선 점검표[별지 제9호 서식]
- ⑦ 부속선 점검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별첨1]

◎ 운항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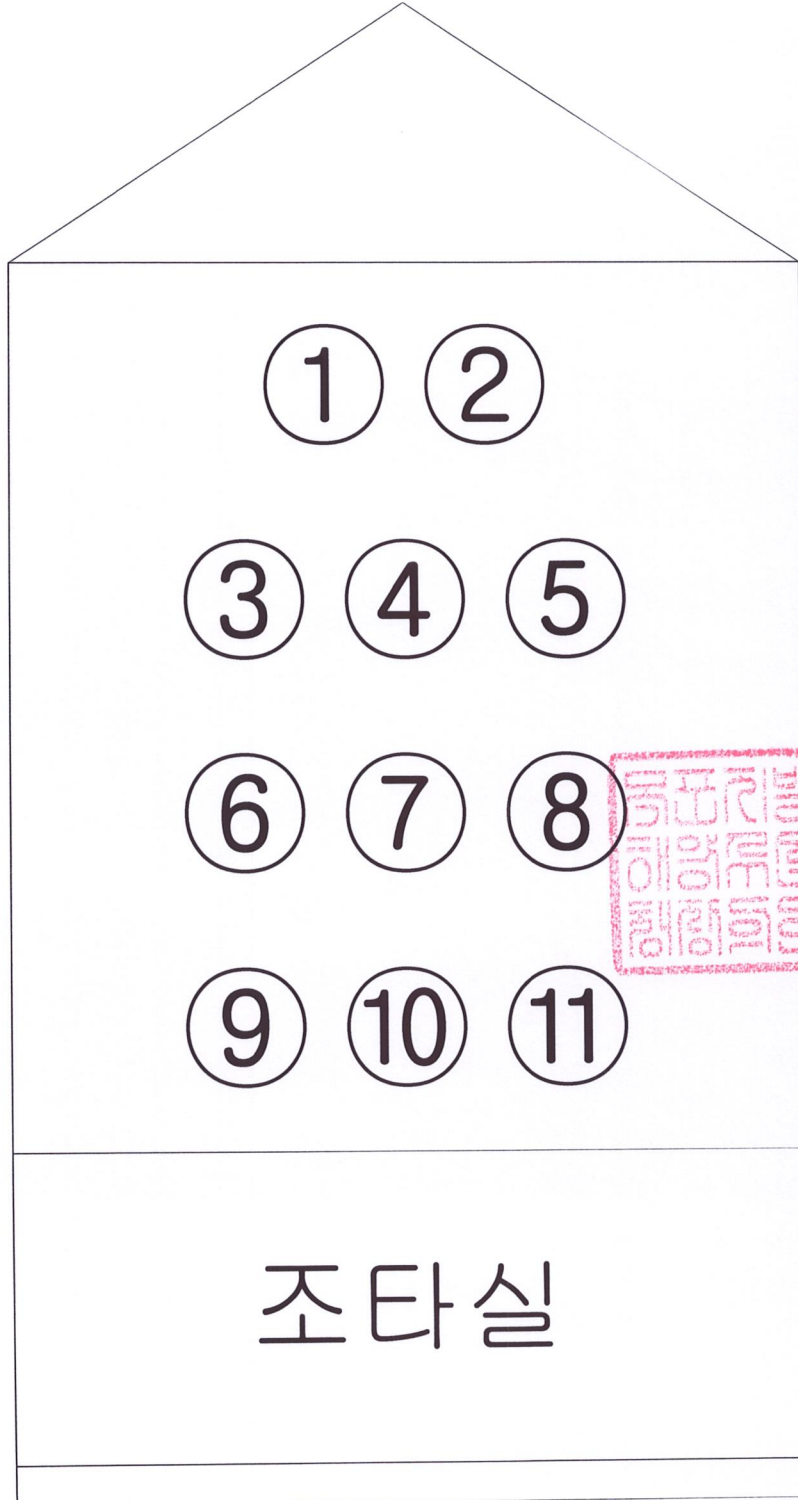
- 기항지명 : 흑산면 상태도
- 종 선 명 : 태도1004호



[별첨2]

◎ 여객배치도

여객배치도



부속선명 : 태도1004호

[별첨3]

◎ 선적증서

■ 2024년 12월 13일 (일) 14:00 ~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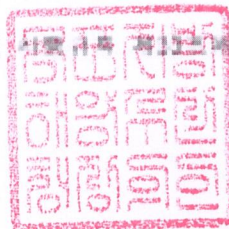
1/2페이지

제 2024-0813호

선 적 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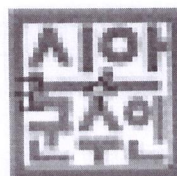
| | | | | |
|--------|-----------------------------|-------|---------------|---------|
| 소통자 | 실명(당첨명) 신연군우 | | | |
| |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임례읍 천사로 1304 | | | |
| 예선번호 | 121-2008-6400294 | | 금액 | 13,500원 |
| 예선의 영통 | 제도 100원 | 후오서우 | 1.1% | 1,485원 |
| 예선의 종류 | 불리권 100% | | 금액 | 0.000원 |
| 선 적 항 | 신안군 옥선면 | 총 분 수 | 1,985원 | |
| 추진기관 | 신안군민회 지원 6000원/회/1회 | | | |
| 호 권 자 | 대행기업 | 전수연출일 | 2024년 12월 13일 | |

「예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의 같이 발급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신 안



[별첨4]


◎ 어선검사증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어선 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MP-24-03910 호
Certificate No.: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태도1004호 |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 1212008-6482204 |
| 선질 Ship's Material | FRP | 총톤수 Gross Tonnage | 7.93 톤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어선 | | |
| 추진기관 Main Engine | 디젤기관 | 441 [kW] [kW] | 600 [PS] [PS] 1 대 대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13.50 미터 |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 무선전화 |
|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12 명 (어선원 : p Crew | 12 명, 어선원 외의 사람 : P, Other Personnel: | P) 명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 | |
| 유효기간 Validity | 2022년 03월 23일 부터 2027년 03월 22일 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untid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4년 06월 13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별첨5]

◎ 어선특별검사증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제 MP-24-04348 호
Certificat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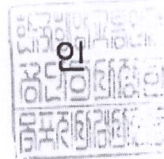
|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태도1004호 |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 1212008-6482204 | |
| 선질 Ship's Material | FRP | 총톤수 Gross Tonnage | 7.93 톤 |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어선(어선) | | | |
| 추진기관 Main Engine | 디젤기관 | 기관 Type | 441 [kW] 600 [PS] 1대 기관 Type | 600 [PS] 1대 기관 Type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13.50 미터 m |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 무선 전화 | |
|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12 인 (어선원 : 1 인, p (Crew P. | 어선원 외의 사람 : 11 인) Other Personnel: P) |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 삼태도로부터 인근 여객선 도착지점까지 항행조건으로, 여객선이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어선의 사용을 금지함. - 어선원 외의 사람은 여객선에 탑승 또는 하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함. | | | |
| 유효기간 Validity | 2024년 06월 28일 부터 | 2027년 03월 22일 까지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4년 06월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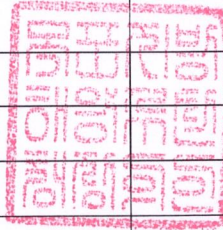


[별첨6]

◎ 출항전 종선 점검표

[별지 제9호서식]

| 출항 전 종선 점검표 | | | |
|-------------|---------------|--------------------|--|
| 선 명 : | | | |
| 일 시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 | 선체 이상 유부 | | |
| | 기관 이상 유부 | | |
| | 통신기 이상 유부 | | |
| | 선장 및 선원 승선 여부 | | |
| | 소화설비 이상 유부 | | |
| | 구명설비 이상 유부 | | |
| | 청 소 상 태 | | |
| | 여객선 승선가능인원 | | |
| | 종선운항계획 및 승선인원 | 1회 : 명, 2회 : 명 | |
| | 위험물 반입 여부 | | |
| 점검확인 | 점 검 자 | 확 인 자 | |
| 일 시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 | 선체 이상 유부 | | |
| | 기관 이상 유부 | | |
| | 통신기 이상 유부 | | |
| | 선장 및 선원 승선 여부 | | |
| | 소화설비 이상 유부 | | |
| | 구명설비 이상 유부 | | |
| | 청 결 상 태 | | |
| | 여객선 승선가능인원 | | |
| | 종선운항계획 및 승선인원 | 1회 : 명, 2회 : 명 | |
| | 위험물 반입 여부 | | |
| 점검확인 | 점 검 자 | 확 인 자 | |



[별첨7]

◎ 부속선 점검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부속선 점검 보고서 | | | | | | |
|------------------|--------------------------|--------------------------------------------|---------------------|--------------------------------------|----------|----------|
| 점검일자 | | | | 점검장소 | | |
| 선 명 | 태도1004호 | 어선번호 | 1212008 -6482204 | 선 질 | FRP | |
| 총 톤 수 | 7.93톤 | 기관마력 | 600마력 | 선 종 | 기선 | |
| 진수일자 | 2012년 12월 10일 | | 보험가입 | 보험기간 | | |
| 소 유 자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수 | | | 보상금액 | | |
| 사 업 자 | ㈜남해고속 성기순 | | 최대승선인원 | 선원 : 1 명 여객 : 11 명 임시승선자 : 0 명 | | |
| 선 박 운 항 | 항행구역 | 상태도 연안 | 운항거리 | 최대 : 500m 최소 : 200m | 운항시간 | 5~10분 이내 |
| | 선착장위치 | 상태도 항내 | | 집안시설 | 석축 선착장 | |
| | 수 심 | 항내 : 3 m. 중간기점 : 15 m. 본선대기지점 : 30 m | | | | |
| | 항해장애물 | 없음 | | | | |
| | 선 장 명 (연락처) | 김 용 필 (010-8726-5336) | | 해기사 민허중유 | 승선 일자 | |
| 점 검 사 항 | 선 체 | | | 구명설비 | | |
| | 기 관 | | | 구명조끼 | | |
| | 항해장비 | | | 구명등부(구명부환) | | |
| | 조타장비 | | | 소 화 기 | | |
| | 통신시설 | | | 낫 | | |
| | 채선시설 | | | 선기시설 | | |
| 그 밖의 사항 - |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 서 명 |